2013년도 제20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 1. 일 자 2013년 10월 24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총재)

임 승 태 위 원

하성근 위원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 4. 결석위원 박 원 식 위 원(부총재)
- 5. 참 여 자 김 준 일 부총재보 강 준 오 부총재보

허 재 성 부총재보 서 영 경 부총재보

추 흥 식 외자운용원장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

신 운 조사국장 성 병 희 거시건전성분석국장

김 민 호 통화정책국장 유 상 대 국제국장

전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김 태 석 공보실장

김 남 영 금융시장부장 문 한 근 의사관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 <의안 제47호 — 금융안정보고서(2013년 10월)(안)>

(1) 거시건전성분석국장이「한국은행법」제96조 제1항에 의거 금융안정보고 서(2013년 10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금융안정보고서의 작성과 보완 등이 주관위원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으며,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 및 중점사항과 위원 협의회 등에서의 주요 논의내용 및 보완·수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금융안정보고서의 기본체계를 2013년 상반기 보고서와 동일하게 유지한 가운데 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잠재위험 요인 식별과 분석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음. 또한 종전과 같이 거시건전성협의회가 원고작성 전반을 조율 한 가운데 유관부서가 집필에 공동으로 참여하였음.

보고서 작성시 중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2장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의 1절 '가계'에서는 중소득 중신용 가계의 채무부담 증대 우려, 최근 주택시장 상황 변화관련 잠재위험을, 2절 '기업' 에서는 기업간 양극화 현상 심화, 일부 대기업의 유동성 위험,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경쟁력 저하 우려 등을 잠재위험 요인으로 다루었음.

둘째, 3장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의 1절 '은행'에서는 예대금리차 축소 등에 따른 은행의 수익성 저하 우려와 함께 신용위험 부각, 은행의 리스크 관리 위주 영업전략 등에 따른 수익창출 기반 약화 우려를 분석하였으며, 2절 '비은행금융기관'에서는 상호금융조합 가계대출 건전성 저하, 증권회사와 신용카드회사의수익성 악화 지속, 생명보험회사의 금리변동 리스크 증대 등을 점검하였음. 3절 '금융시장'에서는 비우량기업의 회사채 및 CP발행 여건 악화를, 4절 '외환건전성'에서는 해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입 확대 가능성을 잠재위험요인으로 분석하였음.

셋째, '금융안정 이슈 분석'에는 '자영업자 부채의 취약요인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점검'과 '은행부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록하였음.

아울러 그동안 위원협의회 등에서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참고자료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부 참고자료의 경우 본문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들은 <참고III-2> '금리리스크 측정을 위한 표준방법의 적 정성 평가'의 경우 결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들은 '금융시장'에는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률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동양그룹 회사채 및 CP 매수 등과 같은 위험추구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을, '외환건전성'에는 최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위험성을 각각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는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보 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다고 보고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가 초기에 비해 내용이 특색있고 시사점도 많아져 동 분야와 관련한 당행의 분석능력이 많이 발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 고서에 대한 시장 및 다른 정책당국의 반응은 어떤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시장에서는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제시한 이슈와 관련된 정책이 보고서 제출 전후로 발표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 측면에서도 당행이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후 보고서의 내용이 시장이나 정책당국에 의해서 어떻게 현실화되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정책당국과 충실히 협의하여 보고서 작성시의 의도를 정책당국에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안정보고서(2013년 10월)(안)(생략)